

일 반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준]

목 차

- 1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21

〔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01. 0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3. 01. 04.

2. 제안이유

- 향노화힐링랜드를 찾는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 전문가의 활용) 및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에 따라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 업 명 : 2023년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위탁 운영
- 나. 위 치 : 향노화힐링랜드 일원(거창군 가조면 의상봉길 834)
- 다. 사 업 비 : 92,666천원(국 46,333 도 32,433 군 13,900)
- 라. 사 업 량 : 숲해설가 1명, 산림치유지도사 2명

마. 시설현황

- 자연휴양림 : Y자형 출렁다리, 자생식물원, 숲속놀이터 등
- 치유의 숲 : 무장애숲길, 산림치유센터, 숲체험장, 명상숲길 등

바. 위탁대상 사무 : 산림서비스(숲해설·산림치유) 기획·운영

- 산림서비스(대면 및 비대면 병행) 신규개발 및 홍보물 제작
- 전 연령층 맞춤형 산림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운영, 설문조사(피드백) 및 결과를 통한 효과 분석

사. 위탁기간 : 2023. 4. ~ 12.(예산범위내) ※ 국·도비 예산확보 사업

아. 향후계획

- 사업계획 수립(사업규모 및 과업목표 설정)
- 사업자 선정(사업공고 접수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선정)
- 협약체결 → 사업수행 및 평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및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및 제20조(지원)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산림청훈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거창군 거창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제8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나. 2022년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민간위탁 운영실적

- 운영기간 : 2022. 4. ~ 12.
- 장 소 : 향노화힐링랜드 일원
 - 산림치유센터, 자생식물원, 숲속놀이터, 무장애데크로드, 명상장 등
- 대 상 : 유아에서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
- 인 원 : 1회 20명 이내
- 위탁기관 : 좋은숲(대표 신승호)
- 운영방법 : 각 프로그램별 숲해설가(1인)·산림치유지도사(2인) 자율 진행
- 참여인원 : 총 6,664명(숲해설 2,111명, 산림치유 4,553명)
- 신청방법 : 힐링랜드 홈페이지 및 전화접수 예약, 당일 현장모집
- 체 험 료 : 숲해설 무료 / 산림치유 어른 1만원, 청소년 5천원
- 프로그램 : 숲해설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 숲 해 설 : 주5일, 일3회(10:00~11:00, 13:00~14:00, 15:00~16:00)
 - 산림치유 : 주6일, 일2회(09:30~12:00, 13:30~16:00)
- ※ 계절별 힐링랜드 현장에 맞추어 프로그램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운영
- 세외수입 : 금42,501천원(산림치유프로그램) ※ 숲해설 무료
- 민간위탁의 효과
 -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을 통해 위탁(운영) 함으로써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분야 활성화
 - ※ 2017년 이후 산림복지전문업을 직영에서 위탁운영으로 전환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향노화 힐링랜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문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등을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임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에 따르면 “민간위탁”이란 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 같은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르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민간위탁의 대상 사무가 되는바 숲해설 및 산림치유사의 경우 특수한 전문지식으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또한, 제4조제3항중 자치사무는 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계약일 경우 위탁 만료일 60일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의 경우 재계약이라기 보다는 매년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로 매년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 받고 있음
-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의 동의는 대상 업체에 대해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여부를 동의받는 것임으로 일정기간(3년 또는 5년)에 대해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매년 공고를 통해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해볼 필요도 있을 것임
- 본 동의안의 경우 기타 다른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6. 관계법령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 ① 산림복지시설을 조성·운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 ① 산림복지전문업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3.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 ③ 산림교육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⑦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20조(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1.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2. 제8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자
4.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
6.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

☐ 산림문화·휴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치유의 숲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법 제11조의3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

1.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2.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숲길: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치유의 숲시설이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운영계획 수립)

치유의 숲시설의 운영·관리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치유의 숲의 일반현황
2. 치유의 숲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계획
4. 산림치유지도사 배치계획

제9조(프로그램 운영)

- ① 운영·관리자는 국민들이 치유의 숲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여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른다.
- ③ 운영·관리자는 치유의 숲의 산림치유 환경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계획하는 교육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개정2014.5.28)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2014.5.28)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의회동의)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힐링랜드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힐링랜드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2022.11.30.)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항전부개정 2014.10.0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2014.10.01)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항전부개정 2014.10.01 2015.12.10. 2022.11.30.)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14.10.01. 2015.12.10.)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2014.10.0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01. 0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3. 01. 04.

2. 제안이유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라 삼봉산 권역 운영위원회 등 4곳에 관리위탁을 갱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 설 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
- 나. 위탁대상 사무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 관리위탁 운영 관리
 -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은 「농어촌정비법」 및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에 의거 설치된 시설로, 농촌 교육, 도시민의 농촌체험 및 교류, 지역민화합 등의 농촌지역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됨

다. 위탁시설 현황(4개 지구)

위탁 지구	위탁 기간(5년)	위탁기관	위 치	위탁 시설물(면적)
삼봉산 권역단위	2018.3.14. ~ 2023.3.13.	삼봉산권역 운영위원회 (베짱이사랑방영농 조합법인)	- 고제면 봉계리 85-1 - 고제면 봉계리 89	- 다목적센터 559.76㎡ 1동 (사무실, 북카페, 체험실, 식당/회의실, 체험객실) - 사과선별장 및 저온저장시설 1식
신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2018.4.6. ~ 2023.4.5.	(사) 신 원 면 생활체육협의회	-신원면 괴정2길 50	- 사랑누리센터 453㎡ 1동(사무실, 헬스장, 아동센터 등) - 스포츠시설 1식, 공용주차장 1식, 어린이놀이터 1식 등
남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2018.4.30. ~ 2023.4.29.	남상면 어울림마을 운영위원회	- 남상면 무촌리 656	- 다목적센터 980.03㎡ 1동(사무실, 헬스장, 대회의실 등) - 체육공원 1식, 공용주차장 1식, 어린이놀이터 1식 등
가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2018.5.30. ~ 2023.5.29.	가조권역 운영위원회	-가조면 마상리 316-25	- 커뮤니티센터 204.0㎡ 1동(사무실, 회의실) - 생태주차장(2,740㎡ 95대)

라. 운영계획

○ 위탁기관 : 4곳(삼봉산권역 운영위원회, (사) 신원면 생활체육협회, 남상면 어울림마을 운영위원회, 가조권역운영위원회)

○ 위탁내용

위탁 지구	위탁 기간(3년)	위탁기관	위탁업무	위탁비용
삼봉산 권역단위	2023.3. ~ (3년간)	삼봉산권역 운영위원회 (베짱이사랑방영농 조합법인)	.위탁시설 관리 및 운영 .시설물의 유지관리	. 무 상 위 탁 ※ 운영 수입금 유지관리비로 사용
신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2023.4. ~ (3년간)	(사) 신 원 면 생활체육협의회	.위탁시설 관리 및 운영 .시설물의 유지관리	. 무 상 위 탁 ※ 운영 수입금 유지관리비로 사용
남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2023.4. ~ (3년간)	남상면 어울림마을 운영위원회	.위탁시설 관리 및 운영 .시설물의 유지관리	. 무 상 위 탁 ※ 운영 수입금 유지관리비로 사용
가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2023.5. ~ (3년간)	가조권역 운영위원회	.위탁시설 관리 및 운영 .시설물의 유지관리	. 무 상 위 탁 ※ 운영 수입금 유지관리비로 사용

※ 갱신기간 3년

마. 향후일정

- 위탁지구 위·수탁 계약 체결 : 2023년 2월부터 순차적 체결
- 해당지구 위탁운영 : 2023년 3월부터 순차적 운영

4. 참고사항

가. 위탁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제3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8조, 제27조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10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재계약을 위해 군의회에 60일전 동의를 받는 것으로 재계약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 위탁) 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제5항 단서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이 혼용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제3조(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따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은 직접 관리 및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기간은 5년이내이며,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3항의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갱신할때 마다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동의안의 경우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10조 관련)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 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제3조(시설물의 관리·운영) ①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 또는 임대 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와 위탁 방법,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료) 군수는 시설물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관리수탁자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자 선임) 관리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의 관리주체로서 필요에 따라 시설물별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즉시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 지원 등)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8조(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2014.10.01)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2014.10.01)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2014.10.01)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영 제19조제4항 해당여부 (호신설 2014.10.01)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호이동 2014.10.01.)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 6. 21., 2015. 7. 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